

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개정 2018. 12. 31.>

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(제17조 관련)

1.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

가. 시설기준

- 1)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,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,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
- 2)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·교육, 활동지원사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갖출 것
- 3) 사무실에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·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과 통신설비, 집기 등의 설비·비품을 갖출 것
- 4)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활동지원사의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갖출 것

나. 인력기준

1) 인력의 배치기준

가) 관리책임자: 1명

나) 전담관리인력: 1명 이상

다) 활동지원사

(1) 농어촌 지역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·군 지역 중 읍·면은 전 지역, 동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: 5명 이상

(2)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: 15명 이상

(3) (1)과 (2)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,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은 10명 이상을 둘 수 있다.

2) 인력의 자격기준

가) 관리책임자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(1)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

(2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
(3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

(4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

진 사람

- (5)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(6)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) 전담관리인력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
- (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- (2)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
- (3)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(4)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 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3) 인력의 운영기준

가) 관리책임자

- (1) 상근(1일 8시간,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할 것
- (2) 활동지원기관의 장이거나,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일 것
- (3)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·교육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·생활환경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, 활동지원사의 교육·고충상담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질 높은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

나) 전담관리인력

- (1) 상근할 것
- (2)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
- (3)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·교육을 실시하고, 활동지원사의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을 수행하며, 수급자에게 적정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를 배치할 것

다) 활동지원사

- (1) 활동지원기관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 또는 그 인접 시·군·구에 거주할 것
- (2)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
- (3)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 지

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, 급여 제공 시간·내용, 특이사항 등을 보고할 것. 다만, 활동지원사가 섬, 외딴곳 등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.

다. 시설 및 인력의 공동이용

- 1)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,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(이하 "사회복지시설등"이라 한다)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 책임자는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고, 공통되는 시설 및 설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 - 2)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사회복지시설등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담 관리인력은 사회복지시설등에 필요한 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.
2.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, 활동지원기관 분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, 시설 및 인력 기준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·인력기준을 준용한다.